

서울특별시 금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5년 2월 13일
복지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년 1월 23일, 도병두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5년 1월 2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5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5년 2월 13일)
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건축물에 사용한 석면에 대한 조사 및 안전관리를 통해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석면 피해로부터 구민과 지역사회 보호 및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2)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 등의 참여와 협력(안 제3조 및 제4조)
- 3)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 기준(안 제5조 및 제6조)
- 4)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(안 제7조)
- 5)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및 해체·제거작업 공개(안 제8조 및 제9조)
- 6)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와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(안 제10조 및 제11조)
- 7)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(안 제13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나. 검토의견

1) 제정 이유

- 본 제정안은 「석면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석면을 체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

2) 주요 내용

가)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- 「석면안전관리법」 등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

나)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 등의 참여와 협력(안 제3조 및 제4조)

-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, 석면으로 인한 피해방지에 있어서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의무를 규정함

다)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 기준(안 제5조 및 제6조)

라)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(안 제7조)

-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(사용중지)와 조치의 이행상태 확인 및 사용 중지 명령을 받은 소유자가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

마)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및 해체·제거작업 공개(안 제8조 및 제9조)

- 석면건축물 소유자가 지켜야 하는 안전관리 기준과 석면 해체 및 제거 방법, 관련기록 보존에 관하여 규정함

바)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와 해체·제거 및 처리 등 지원(안 제11조 및 제12조)

사)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(안 제13조)

3) 검토 의견

-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 생활 전반에 광범위하게 사

용되고 있는 석면을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「석면안전관리법」
(2012.4.29.)을 제정함

- 본 조례안은 「석면안전관리법」에 따라 석면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석면 피해를 예방하며,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 제정은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